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. 11. 7 선고 2017가단134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17. 11. 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통영시 C 대 53㎡ 중 별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⑤, ⑥, ⑦, ⑧, ⑨,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층 ㉔ 부분을 11.8㎡를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피고는 원고에게 2016. 7. 19. 부터 제1항 기재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40,000원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,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판사백지예

별지